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551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김재구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2225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모두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최초 보증기간 만료 이후 보증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으나 B의 연대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보증기간 만료 이후 발생한 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B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하여 C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보증기한을 2020. 5. 22.까지로 변경하는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원고에게 연장된 보증기한 내에 발생한 C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약 1,121,28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밖에 없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632,173,514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239,910,000원, F은행에 대하여 248,803,434원, G 주식회사에 대하여 99,825,581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사해행위취소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청구의 감축으로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창성, 판사 정희일, 판사 오연수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1. 이천시		임야 516㎡
2. 이천시		임야 997㎡
3. 이천시		임야 1028㎡
4. 이천시		임야 936㎡
5. 이천시		임야 696㎡
6. 이천시		임야 800㎡
7. 이천시		임야 309㎡

